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937
----------	-------

발의연월일 : 2025. 6. 19.

발 의 자 : 최민희 · 권향엽 · 김 현
김현정 · 모경종 · 박민규
박해철 · 이원택 · 정동영
채현일 · 허성무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침해사고의 신고를 받거나 침해사고를 알게 되면 침해사고의 예보·경보 등 침해사고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침해사고로 인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였으나 정부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태의 위험성과 2차 피해의 가능성에 대한 경보·예보를 실시하지 않았고,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소극적 대응과 미흡한 피해구제 조치 등으로 인해

피해 확산에 대한 이용자의 우려와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예보·경보·통지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와 신속한 피해구제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부과와 침해사고 관련 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 침해사고에 대한 사업자 책임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제7항, 제48조의7, 제76조제1항 신설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1항제2호 중 “예보·경보”를 “예보·경보·통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침해사고의 예보·경보·통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2.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제48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7(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침해 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 및 결과 등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와 피해구제가 신속·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침해사고에 관한 이용자 보호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7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1항)제6호의6·제6호의7·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제11호·제11호의3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

출한 자

5.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의2(침해사고의 대응 등)	제48조의2(침해사고의 대응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하면 업무의 전 부 또는 일부를 한국인터넷진 흥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①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침해사고의 <u>예보·경보</u>	2. ----- <u>예보·경보·통</u> <u>지</u>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⑦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u>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u> <u>침해사고의 예보·경보·통지</u> <u>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u> <u>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u> <u>수 있다.</u>
	1. 「 <u>전기통신사업법</u> 」 제2조제 <u>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u> <u>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u> <u>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u> <u>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u>

<신 설>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2.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
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
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
문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
터넷신문사업자에 대한 필요
한 정보의 게재

제48조의7(침해사고로 인한 이용
자 피해구제) ① 정보통신서비
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
영하는 자는 침해사고가 발생
하면 해당 침해사고로 인한 이
용자 피해 확산 방지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 및
결과 등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
자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6조(과태료) <신 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와 피해구제가 신속
·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침해사고에 관한 이용자 보
호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
한 자

3.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자료
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제출한 자

5.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사업
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한 자

② -----

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의5. (생략)

6의6.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의7.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 12. (생략)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0. (생략)

11.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의2. (생략)

11의3.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2.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한 자

12의2. ~ 25. (생략)

-----.

1. ~ 6의5.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7. ~ 12. (현행과 같음)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

-----.

1. ~ 10. (현행과 같음)

<삭제>

11의2.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12의2. ~ 25.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 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⑤ -----제4항----- ----- ----- ----- -----.
--	---